

(가칭)“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”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8. 9.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요구이유

-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시설·사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제고하고
-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구함.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내용

- 어르신들의 복지·문화·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
-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

나. 시설현황

(단위: m², 명)

위 치	시설규모		예상 직원	예상이용 인원(1일)	비 고
	대지(m ²)	건물(m ²)			
다사읍 매곡리 919-2	2,629	2472.5 (지하1층, 지상2층)	관장1, 사회복지사6, 사무원1, 영양사1, 조리사3, 물리치료사1 시설관리자1	500명 정도	2018.11월 준공예정

다. 위탁 필요성

- 달성군노인복지관과 더불어 노인복지관 운영의 일원화 체계 구축
-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
-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

라. 수탁운영자 모집 · 선정 및 위탁기간

- 모집방법 :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
- 심사 및 선정방법 : 서류 및 사업제안설명 심사 후 선정위원회 의결
- 선정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
- 위탁기간 : 5년 (2018. 12. 1 ~ 2023. 12. 31)

마. 위탁운영 지원 예산

- 대구시 위탁운영비 지원기준(2018년)
 -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은 나형에 해당
 - 유형(가~다형)에 따라 운영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 60% 지원

유형	시설기준 (연면적)	직원기준	운 영 비 지원기준(백만원)	이용인원/일	비 고
가형	3,000m ² 이상	16~18명	437(시 262, 구(군) 175)	500명 이상	*운영비 시비 60% 구(군)비 40%
나형	1,500~3,000m ²	9~15명	378(시 227, 구(군) 151)	300~500명	
다형	1,000~1,500m ²	7~8명	318(시 191, 구(군) 127)	100~300명	

- 위탁운영비 예산확보계획 : 1,141백만원(시비227백만원, 군비 914백만원)
 - 시비 227백만원(인건비 227백만원)
 - 군비 914백만원(인건비 151백만원, 운영비 763백만원)

4. 관련 법령 : 별첨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 2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

5. 향후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18. 9월
- 수탁자 선정 결과 공고 : 2018. 9월
- 위·수탁협약 체결(공증) 및 시설물 인계·인수 : 2018. 10월~12월
- 위탁운영 시행 : 2018. 12월

관 계 법 령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 사회복지사업법 】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】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

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**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**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대상기관의 인력·기구 및 재정부담능력
2. 수탁대상기관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
3.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지역간 균형분포 등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】

제4조(운영)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운영

한다. 다만,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위탁 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1조의2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., 2015.12.30., 2017.9.29.)

